

제403회 정례회

'22. 9. 16.(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3. 제안사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 내용과의 중복 및 불필요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장 구분을 신설하여 도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장·부위원장 지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안 제7조)
 - 위원수: (현행) 15명 이내 → (개정안) 20명 이내
 - 위원장·부위원장: (현행)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 → (개정안)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
 - 위원에 도 거주 주민대표, 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추가(각 2명 이상)
- 위원회 연임 사항 변경함. (안 제8조)
 - (현행) 두 차례 → (개정안) 한 차례
- 불필요한 조례 준용 조항을 삭제함. (안 제16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내용과의 중복 및 불필요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7조**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요건을 명시하여 대통령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 제8조**는 위촉된 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2회까지’를 ‘한 차례’로 변경한 것으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같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내용 비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② 시·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조례 준용 사항에 대해 규정한, **현행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함.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는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준용 조항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으며 장 구분을 신설하여 도민 편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판단됨.